

● 제322회 ●
서울특별시의회(임시회)
제2차 운영위원회

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2024. 3. 7.

운 영 위 원 회
수 석 전 문 위 원

【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

I. 조례안 개요

1. 제안자 및 제안경과

- 가. 제안자 : 최민규 의원 외 48명 공동발의
- 나. 제안일 : 2023. 5. 30.
- 다. 회부일 : 2023. 6. 5.
- 라. 의안번호 : 820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의회는 의원의 공무국외활동을 위해 “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”를 설치하여 공무국외활동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심의하고 있음.
- 최근 대한민국에 대한 전세계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서울특별시의회의 공무국외활동 대상지도 확대되고 있으나 위원 정수의 한계로 인해 지역별 전문가를 위촉하여 전문적인 심의를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.
- 따라서 “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”를 비상설화하면서 실제 심사시에 공무국외활동 방문목적 및 대상지별 전문가를 심사위원회에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심의를 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심사위원의 자격을 개선하고 심사위원회를 비상설화 함(안 제6조제1항 각 호 및 제4항, 제5항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로 같음

다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 : 2023. 6. 8. ~ 2023. 6.12.

나) 예고결과 : 없음

2) 소관부서 의견조회 : 보류

II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이병수)

1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

- 개정안은 의회 공무국외활동 대상지 확대에 따라 방문목적과 대상지별 전문가를 각각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(이하 “심사위원회”)에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고, 전문적이며 객관적인 심사를 도모하고자 발의되었음.

2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 현황

-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의회”)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국제 행사 참여, 상호 결연도시 방문 및 초청, 상임위원회 비교시찰 등 의원이 공무국외활동을 함에 있어 전문성 향상과 입법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 (「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」, 이하 “조례”)로 정하고 있음.
- 조례에 따르면 공무국외활동 출장 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)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, 출장을 마친 후에는 이에 대한 공무국외활동보고서를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해야 함.
- 이때 심사위원회(총 9명)는 공무국외활동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당연직인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 1명과 의장이 위촉하는 위촉직인 의회 또는 국외교육연수 전문가 4명, 교육계·법조계·언론계·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인 4명으로 구성됨.
- 심사위원회는 ▶기본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, ▶국외활동 목적과 방문 국가·기관의 적절성, ▶국외활동 인원수와 구성의 적합성, ▶국외활동 기간과 경비의 적정성, ▶국외활동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, ▶공무국외활동보고서의

충실성 및 방문결과의 활용 정도 등의 항목을 별표 공무국외활동 심사 기준(17개)을 적용해 심사하고 있음.

- 현재 심사위원회는 2022년 9월에 최초 위촉된 위원들이 한 차례 연임 (23.9.28~24.9.27.)돼 총 9회 개최되었으며, 국제교류 기본계획 및 상임위원회 비교시찰 계획서와 결과보고서 등 총 19건을 심사하였음.

3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의 비상설화(안 제6조)

- 개정안은 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서 현행 의회 또는 국외교육연수 전문가 4명에 방문목적 및 대상지 전문가 각각 1명을 반드시 포함(안 제6조제1항)하고, 상설위원회인 심사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며, 위원의 임기를 “1년”에서 ‘회의 종료시 자동 해촉(안 제6조제4항)’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임.

<신·구조문 대비표>

현행	개정안
제6조(심사위원회 설치·운영) ① 의장은 공무국외활동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설치·운영한다. 다만, 공무국외활동 당사자는 심사위원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.	제6조(심사위원회 설치·운영) ① 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서울특별시의회운영위원장	1. 의회 운영위원장
2. 의회 또는 국외교육연수 전문가 4명	2. 의회 또는 국외교육연수 전문가 : 4명(다만, 해당 공무국외활동 방문목적 및 대상지별 전문가 각각 1명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)
3. 교육계·법조계·언론계·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4명	3. 교육계·법조계·언론계·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: 4명

현행	개정안
<p>② ~ ③ (생략)</p> <p>④ <u>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u></p> <p>⑤ <u>지방선거에 따라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새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.</u></p> <p>⑥ (생략)</p>	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심사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하고, 위원 임기는 회의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. 다만,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무국외활동보고서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가 완료될 때에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.</u></p> <p><삭 제></p> <p>⑥(현행과 같음)</p>

- 세계화, 지방화, 정보화 시대 속에서 지방차원의 공공외교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되면서 서울시의회의 상호결연도시를 포함한 국제교류도 확대 추세에 있음.

<서울시의회 상호결연도시 현황>

연번	도시명	국가명	체결일	연번	도시명	국가명	체결일
1	뉴사우스웨일즈	호주	'96.8.28.	9	상파울로브라질	브라질	'11.5.23.
2	멕시코시티	멕시코	'97.4.16.	10	알마티	카자흐스탄	'05.5.5.
3	앙카라	터키	'97.7.23.	11	저장성	중국	'01.3.30
4	바르샤바	폴란드	'97.7.29.	12	비슈넵	키르기스스탄	'16.1.14.
5	모스크바	러시아	'97.4.1.	13	웰링턴	뉴질랜드	'18.1.18.
6	울란바타르	몽골	'97.8.27.	14	베이징	중국	'22.9.19.
7	누르술탄	카자흐스탄	'05.5.5.	15	호놀룰루	미국	'23.10.11.
8	방콕	태국	'07.11.26.	16	하노이	베트남	'23.12.18.

- 그러나 현행 심사위원회의 위촉위원 정수 8명으로는 각 상임위원회별 방문 목적과 대상지에 대한 적정성, 타당성 등을 종합적·전문적으로 심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음.

- 이에 개정안은 심사위원회를 비상설화해 심사 시 공무국외활동 방문목적 및 대상지별 전문가를 포함하여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심사를 도모하려는 것임.
-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·외유성 연수와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 제도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 스스로 객관적이고 전문성 있는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의원 공무국외활동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은 의회의 위상과 이미지 강화에 도움이 될 것임.
- 다만, 심사위원회의 비상설화로 각 목적별, 지역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될 경우 공무국외활동 기본계획과 각 상임위별 결과보고서 등의 연계 및 관리 등에 있어서 어려움이 예상되며, 위원회 운영의 비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우려¹⁾됨.
- 또한, 개정안은 기존 위촉위원들의 잔여임기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경과조치를 규정하지 않아, 종전 위원의 임기 및 구성 등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.
- 아울러, 17개 광역의회 중에서 심사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는 곳은 한 곳도 없으며, 서울시도 목적·기능상 필요하나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만을 비상설로 정비해 운영하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.
- 따라서, 심사위원회의 비상설기구 전환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, 심사위원을 풀(Pool)제로 운영하거나, 필요한 경우 개정안 취지에 맞는 비상설위원을 추가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심사위원회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성, 전문성 강화 등을 고려한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.

1) 의회사무처의견 : 지역 또는 분야별 사전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와 자문의견서 제출 의무화로 중복 심사가 우려되고, 위원회의 책임성과 운영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**위원회 구성 현행 체계 유지.**

4 종합 의견

- 개정안은 ‘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’를 안전 발생 시에만 주체·지역별 전문가를 포함해 구성하는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함임.
- 다만, 위원회를 상설로 운영할 것인지 비상설로 운영할 것인지는 효율성과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, 심사위원의 위촉 범위의 확대, 다양한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위촉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살리면서도, 심사위원회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성, 연속성 등을 제고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

담당 연락처

02-2180-7688

참고1

공무국외활동 심사기준(서울시의회)

[별표] 공무국외활동 심사기준(제7조 관련)

항목	심사기준	예	아니오
기본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	1. 공무국외활동 기본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였는가?		
	2.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 및 인터넷 등 공무국외활동 이외 수단으로 해당 업무수행 및 자료수집이 가능한가?		
	3. 방문국의 사회, 문화, 관습 및, 감염병 발생, 활동자 신변 안전 등 현지 사정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가?		
	4. 평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며, 국외활동 중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?		
국외활동 목적과 국외활동 국가 또는 방문기관의 적절성	1.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?		
	2. 과거 3년간 방문 기관을 동일한 목적으로 공무국외활동 여부 및 향후 다른 활동자가 동일 기관을 동일한 목적으로 방문할 계획이 있는가?		
국외활동 인원수와 국외활동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	1. 국외활동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활동자 선정이 적합한가?		
	2.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활동에 포함되었는가?		
	3. 국외활동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활동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가?		
국외활동 기간과 경비의 적정성	1. 국외활동 목적에 필요한 적정 기간을 책정했는지?		
	2. 공무국외활동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?		
	3. 타 기관으로부터 활동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?		
국외활동 관계 기관과의 사전협의 여부	1.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?		
	2. 숙박, 통역, 교통수단 등 공무국외활동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방문기관과 협의하여 확보하였는가?		
국외활동 준비의 내실성	(비교시찰의 경우) 방문국과 방문기관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였는가?(미개최 시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계획 제출)		
공무국외활동 보고서의 충실성 및 방문결과와 활용성	1. 기관 방문, 현지회의 등 공무국외활동 내용을 활동 목적에 맞게 작성하며, 증빙자료 확보에 관한 계획이 있는가?		
	2. 공무국외활동 결과 및 노하우를 활용 및 공유할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가 ?		

참고2

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 개요 및 현황

□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

○ 설치근거 :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

- 제6조(심사위원회 설치·운영), 제7조(심사기준), 제8조(회의) 등

○ 주요기능 :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 및 자문 등

○ 임 기 : '23. 9. 28. ~ '24. 9. 27.

- 지방선거에 따라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면 새로 심사위원회를 구성
- 위촉일로부터 1년, 한 차례 연임 가능

○ 구 성 : 위원 9명 (당연직 1명, 위촉직 8명)

- (의회) 시의회 운영위원장
- (민간) 의회 또는 국외교육연수 전문가 4명
교육계 · 법조계 · 언론계 · 시민사회단체 추천인 4명
-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선출,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

○ 방 법 : 의장 추천

▶ 위원회 위촉직 위원 특정 성별 10분의 6 초과 금지

○ 근거 :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(정책결정과정 참여)

성평등기본조례 제15조(시정참여 확대)

서울시 위원회 설치 운영 지침(다양한 계층 참여 확대)

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목표 5(성평등, 여성의 참여 보장)

▶ 장애인 최소 1명, 청년 비율 15% 이상 노력

※청년 : (청년기본법) 만 19~34세 이하

○ 추진일정 :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 필요시 수시 개최

제11대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 명단

임기 및 구성 : '23.9.28.~'24.9.27. / 9명(운영위원장1, 민간 전문가 8)

연번	직위	현 직	주요 학력 및 경력
1	위원장	· 애플에너지(주) 대표이사	·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수료 · (전)김영삼 정부 민정비서실
2	부위원장	· 로코코 대표	· 세종대학교 호텔경영학과 졸업(석사) · 서울경제인협회 고문
3	위원	· 한국협단체전문가협회 상임고문	· 부산대학교 행정학과 졸업(학사) ·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(석사) · (전)국회의장실 정무비서관
4	위원 (당연직)	· 서울특별시의회 운영 위원회 위원장	·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졸업(석사) · 서울특별시의회 제11대 의원 · 제7대, 8대 도봉구의회의원
5	위원	· 스카이코드 대표	· 극동대학교 경영대학원 박사 재학 중 · 서울경제인협회 홍보본부 위원
6	위원	· 한국건강관리협회 사무총장	· 이화여자대학교 보건관리학과 졸업(박사) ·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총동창회장
7	위원	· (사)서울미래교육연구원 이사장	·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졸업 ·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· (전)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
8	위원	· 동양대학교 철도건설 안전공학과 부교수	· 성균관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(석사) · 한양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(박사) · (전)국가건설기준센터 철도위원장
9	위원	· 서정대학교 호텔항공 관광학부 조교수	· 한양대학교 관광학과 졸업(박사) · (전)우송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 외래교수

제11대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 활동 실적

□ 활동실적 : 9회 개최, 19건 심사

연번	개최일시 (장소)	참석위원	안건	심의결과
1	2023.12.27.(수) 16:00~17:40 (본관 제1회의실)	박정환, 백순복, 김정열, 이은희, 이준순, 진진희	○ 2024년 국제교류 기본계획 ○ 2023년 비교시찰 활동보고서 6건 - 행사·환수·문체·주공·도계·교통위원회	원안가결
2	2023.6.16.(금) 15:00~17:00 (본관 제2회의실)	박정환, 김정열, 백순복, 이은희, 이준순, 진진희	○ 행정자치위원회 싱가포르, 홍콩 비교시찰 - '23.7.9.~7.15.(6박7일) ○ 203년 비교시찰 활동보고서 4건 - 기경·보복·도안·교육위원회	원안가결
3	2023.4.26.(수) 14:00~16:00 (본관 제1회의실)	박정환, 김정열, 이도경, 이은희, 이준순	○ 교통위원회 스웨덴, 핀란드 비교시찰 - '23.5.18.~5.25.(5박8일) ○ 주택공간위원회 스페인 비교시찰 - '23.5.21.~5.29.(7박9일) ○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호주 비교시찰 - '23.5.22.~5.28.(5박7일)	원안가결2 수정가결1 (주택공간)
4	2023.4.11.(화) 13:30~15:50 (본관 제1회의실)	박정환 위원장 등 6명 (박정환, 백순복, 김정열, 박환희, 이도경, 이은희)	○ 기획경제위원회 스위스, 이탈리아 비교시찰 - '23.5.9.~5.18.(8박10일) ○ 환경수자위원회 스페인, 포르투갈 비교시찰 - '23.5.9.~5.17.(7박9일) ○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호주 비교시찰 - '23.5.9.~5.16.(6박8일)	원안가결2 수정가결1 (기획경제)
5	2023.2.22.(수) 14:00~16:20 (의원회관 7-2회의실)	박정환 위원장 등 7명 (박정환, 백순복, 김정열, 박환희, 이도경, 이준순, 진진희)	○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일본 비교시찰 - '23.3.14.~3.21.(7박8일) ○ 보건복지위원회 호주, 뉴질랜드 비교시찰 - '23.3.16.~3.23.(6박8일) ○ 교육위원회 호주 비교시찰 - '23.3.21.~3.28.(6박8일)	원안가결
6	2022.12.7.(수) 16:00~17:45 (본관 제1회의실)	박정환 위원장 등 7명 (박정환, 백순복, 이준순, 이도경, 이은희, 정형상, 진진희)	○ 주택공간위원회 일본 비교시찰 - '22.12.25.~12.28.(3박4일) ○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일본 비교시찰 - '22.12.16.~12.29.(3박4일)	원안가결
7	2022.11.1.(화) 16:30~17:30 (본관 제2회의실)	박정환 위원장 등 6명 (박정환, 백순복, 김정열, 박환희, 이은희, 이준순)	○ 심미경 의원 대만 공무국외활동 - '22.11.11.~11.13.(2박3일)	원안가결
8	2022.10.14.(금) ~10.18.(화) (서면)	박정환 위원장 등 9명 (박정환, 백순복, 김정열, 박환희, 이도경, 이은희, 이준순, 정형상, 진진희)	○ 기획경제위원회 호주 비교시찰 - '22.10.18.~10.24.(5박7일)	원안가결
9	2022.9.19.(월) 16:00~18:00 (의장접견실)	박정환 위원장 등 8명 (박정환, 백순복, 김정열, 박환희, 이도경, 이은희, 이준순, 진진희)	○ 위원 위촉식 ○ 위원장(박정환) 및 부위원장(백순복) 호선 ○ 교통위원회 아랍에미리트 비교시찰 - '22.10.13.~10.18.(5박 6일) ○ 기획경제위원회 호주 비교시찰 - '22.10.18.~10.26.(7박9일)	원안가결